

대구예술대학교 교원국외여행에관한규정

(개정 2014.11.10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8.06.14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 라 한다) 교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신청 및 허가) ① 교원이 연구 및 기타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를 갖추어 국외여행허가원을 출국 15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8.06.14)

② 국외여행은 학교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.

③ 국외여행의 기간은 학기당(방학기간 제외) 통산 10일 이내로 하되, 2회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
단, 공무출장, 파견, 외국기관방문, 연수, 국제학술대회, 작품발표등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 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14.11.10.)

제3조 (기간연장)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행 및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3일전에 상세한 사유를 갖추어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14.11.10.)

제4조 (허가취소) 국외여행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여행승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.

1. 외국여행 기간중 국가 또는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2. 여행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

제5조 (외국여행에 따르는 의무) ① 외국여행으로 결강된 수업은 학기중에 보충하여야 한다.

② 외국여행으로 습득한 정보 및 자료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